

[]퇴비 []지렁이분 []석회처리
[]상토 []동애등에분

원료 지정서
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)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 주소

배출업자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사업장 소재지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 주소

지정원료명			
-------	--	--	--

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	분석성적	
	분석기관명	
	분석방법	
	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	
지정원료의 조 건	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	
	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	
	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	
	기 타	

*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
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
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「비료 공정규격설정」 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
결과 []퇴비·[]지렁이분·[]석회처리·[]상토·[]동애등에분 원료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
다.

<개정 2013. 2. 14., 2021. 11. 24., 2024. 12. 5.>